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, '15.12.24 개정, '16.1.1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
- 나. 상위 기준에 맞게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미시 금고지정 방법 및 금고의 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나. 구미시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5조)
- 다.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(안 별표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미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,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.

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4조관련)

평 가 분 야	평 가 항 목	배 점	비 고
	계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 계	31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(10)	
	- 국외평가기관	6	
	- 국내평가기관	4	
	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	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(21)	
	- 총자본비율(안정성)	7	
	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7점)로 평가		
	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7	
	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6	
	- 대손충당금적립율	1	
	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 농수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		
	※ 금융감독원,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	
2.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소 계	18	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	
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5	
	다. 구미시 대출금리	4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3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소 계	20	
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	5	
	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7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8	
4. 금고 업무 관리 능력	소 계	22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7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7	
	※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		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3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	소 계	9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	5	
	나.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계획	4	
	※ 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'실적'으로, "시와의 협력사업"은 '계획'으로만 평가		

□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항목 2(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)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금고 지정 방법) ① (생략)	제3조(금고 지정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금고는 일반회계, 특별회계 (기금포함)로 구분하며 회계별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</u>	② <u>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 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 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.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 사업) ① <u>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 이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 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 여야 한다.</u>	제15조(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 사업) ① <u>구미시와 금고 간 협 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 토록 하고 「지방재정법」 제34 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 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</u>
② <u>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 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한 다.</u>	② <u>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 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 보에 공개하여야 하며, 집행내 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u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제77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, 시·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<신설 2014. 5. 28>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(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, '16.1.1시행)

1. 금고의 수

-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

2. 『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』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

-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

※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(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)

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

- **(금액 공개)**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(시보)에 공개
- **(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)**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.

소관 실 · 과		세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이 영 활
	담 당	강 황 진
	담 당 자	임 현 철 (480-6892)